

第287回國會
(臨時會)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小委員會)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2月18日(木)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019)(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21)(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27.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31.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
3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6.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3
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0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12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16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7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21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21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1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26.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7.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1
31.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중 의원 등 61인 발의)	21
3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10시17분 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위해서 기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지경부 소관 법률안 중에서 제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의사일정 제1항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개정안은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회원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의 적용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해서 현행 당연회원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중소기업인의 부담 완화와 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수반되어야 하고 상공회의소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필요성도 있지만 일몰

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회원제도의 변경은 상공회의소의 기능과 역할,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회비 부담의 정도 및 자구 노력, 외국의 제도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당연회원제를 유지하면서 그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3.5%가 임의회원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비 감소율이 3% 정도로 미미한 점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좀더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상공회의소의 분리 및 합병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고 있는데, 의원총회 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분리 및 설립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리'라는 자구를 법인 또는 회사를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는 '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또한 분리될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기 절차 규정을 수정안에 넣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합병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합병에 관해서도 현행법에 합병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간 다툼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합병절차를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분리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수정절차를 담아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고맙습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발의하시는 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의 역사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법권을 갖고 계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법의 발의에 참여하신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기업에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다, 이러한 식으로 부분 당연가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도.' 하는 그런 조치가 조금 수반되어야만 아마 기업들로부터 동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대부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이는 통합 상의가 분할되는 경우에 기존 통합 상의의 의결로만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통합돼 있는 상의의 뜻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 당연가입으로 영구

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당초 국회의 지난 입법 과정에서 상공회의소가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이런 것을 또 여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경제단체로서의 대표성, 또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또 상공회의소의 당연가입제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저희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나 이런 곳으로부터 지금 일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부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공업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10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이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라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걸 저희 정부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보면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 납부를 위해서 이 정보를 상공회의소에다 제공하는 것은 아마 국세청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김재균 위원 그러면 10조4항을 빼야겠네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삭제해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게 잘못 나온 거지요? 상공업자가 자기 정보를 모를 일은 없을 것이고 이걸 상공회의소가 상공업자들에 대한 과세정보를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걸 말이 잘못된 거죠.

○김재균 위원 잘못된 거죠.

○소위원장 노영민 상공업자가 자기가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

앞부터 들어가지요. 첫 번째 것부터, 당연회원 관련규정 유지 이 문제부터 먼저 하지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규 위원 조문 9조제3호 이렇게 조문 순서대로 나가서 하나하나 정해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이 심사 자료를 기본으로 삼고 핵심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당연회원 관련규정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소위원장 노영민 예.

○이종혁 위원 당연회원제도 유지 문제가 아마 상공회의소 존립의 결정적……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상공회의소가 약속했고 입법했던 대로 일몰제에 의해서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지면 상공회의소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선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상공회의소가 존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회원제가 없다면. 물론 상공회의소가 약속도 했고 그동안에 자구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17대 국회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몰제의 취지로 봐서도 특별한 어떤 사유 변경이 없는 한은 원래 입법 취지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당연회원제도가 만약에 현재의 일몰제도대로 없어진다면 소위 말하는 상공회의소의 존립 기반이 없어진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다음 문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익이나 이걸로 봤을 때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APPF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나간 김에 동남아시아 몇 개 국을 둘러봤습니다. 간 김에 거기 우리 재외동포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니까 예를 들자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태국에서 거주하는 소위 말하는 재외기업인들이 거기에 다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모임을 하면서 저한테 하나 요청을 하는 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국에서 상공회의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부탁이나?’ 이러니까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태국 상공회의소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잘하고 있고 중요한 기능인 태국 상공회의소에 이게, 예를 들자면 정체성이든 혹은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그런 무슨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상당히 좀 공허하고 또 그런 게 좀 약하니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태국의 상공회의소가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가 전부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연결이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가 대표성이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좀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제가 보건대 제가 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계의 다른 선진국가나 다른 유의 사례도 봤어요, 물론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많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상공회의소의 소위 단체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 경제외교라고 하는 게 더구나 글로벌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이걸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상대적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서 할 수 있으면 더 적절한 무슨 다른 기구가 있느냐, 저는 그런 기구도 적절하게 찾아보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존립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이죠, 이게 각 지역별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지만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상공회의소의 역할들을 좀 봤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경제발전이나 기업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공인들의 이익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의 소위 말하는 시민들, 그 지역민들의 아주 절실한 지역 현안이 있을 때 그 지역 현안을 요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러한 현안들을 추진하고 하는 데에

이 상공회의소가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그 케이스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부산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도 아마 그 지역 현안을 위해서 펼 때 이 상공회의소의 기능들이 아마 그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선 기능을 하는 게 이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 당연회원제도를 일몰제로 해서 없애 버리면 상공회의소 존립기반이 없어져 버리고 아마 내가 볼 때 상공회의소는 해체될 겁니다. 아마 굴러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대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 국내적인 이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과거 일몰제의 약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들은 있지만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갑자기 좀 헛갈리는데 당연회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공업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에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어느…… 예를 들어 기업인 대상으로 이 사람이 위에서 얘기했던 10조입니까? 10조제3항에서 얘기했던 이런 매출액 기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인 스스로가 이런 규정이 생기면 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니……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자기 매출액은 당연히 자기가 알 텐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배은희 위원 잘못 오타야.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오타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오타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 법을 보면요, 조문을 보면 상공회의소는 제3항에 따른 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이종혁 위원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몰제나 과거 입법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공회의소의 존립에 대한 어떤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오늘 우리 처음에 했던 당연회원제도 유지에 관련된 것들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안 된다, 이걸 과한 요구다, 이걸 꼭 국세청에다가 과세요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공회의소가 자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선 기능과 기업이익 증진에 상호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누구든지 당연회원제에 가입코자 하는 그런 소위 자발적인 어떤 그런 걸로서 되어야지 이게 마치 상공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과세정보까지라도 요구해서 이걸 갖다가 해서 회비 내라, 그리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것은 이걸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지는 거다, 이걸 안 된다,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저는 질문 삼아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공인의 부담문제를 당연회원 관련 규정과 관련되어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 상공인이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하는 그 부담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어디 뭐 이렇게 조사되거나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 알고 싶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학재 위원** 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여기 3%, 지금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3%로 좀 미미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상의가 경제단체로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문제, 필요로 하는데 부담이 문제다 하면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또 정부 나름대로 어떤 시안이랄까 조정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과세정보를 제3자가 회원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제시하는 15억

기준, 5억 기준, 2억 5000만 원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한 회사인지 아닌지, 과세가 얼마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건 기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방법으로도 가능치 않은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상공회의소의 당연가입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1999년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던 시각은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그 뒤에 이 제도를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때 그때.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이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대표성,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세 차례가 연장이 되어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상공회의소의 회원 가입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뒤에 부담을 느끼느냐, 그러면 대개 회비 내는 데에 부담을 느낍니다. 아마 기업들이 어느 단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혁 위원** 그 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회비는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종혁 위원** 상공회의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공회의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전체 매출액의, 지금 법에서 정해 놓기는 저희들이 4% 이내로 되어 있는 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회비로 들어오는 돈은 약 740억 원 정도 되고요.

○**이종혁 위원** 아니, 대개 한 기업이 회비로 내는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현재 지금 회비 부과액은요, 당연회원의 경우가 매출세액의 0.4% 범위 내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 상공회의소 정관에서 정합니다,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종혁 위원** 그게 개략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특별시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검토보고서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대기업은 1년에 한 1억 이내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들은 대개 50만 원에서 100만 원선 정도 됩니다.

○**이종혁 위원** 1년에?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연회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의 숫자가 27%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안 낸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제재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아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이학재 위원님이 주셨는데 저도 정확히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걸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업에서부터 올라온 불만 중의 하나는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정부 위탁기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탁하는 기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산지증명 발급 업무입니다. 원산지증명 발급을 할 때 회비를 다 낸 기업인지 안 낸 기업인지를 창구에서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원산지증명을 상공회의소에서 받기 위해서 회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일부 불만을 제기해 온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세청의 그 반대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한테 회비고지서가 나가면 회비에 대해서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걸 좀 더 징수를 좀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조항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상공회의소가 회사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열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다만 고지서를 받은 기업이 “아, 나는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걸 클레임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확인된 매출세액을 갖다 보여 주고 나 회원 아니더라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자기 과세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이종혁 위원** 아니, 회비납부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데 무슨 기업인이 가서 “나 이것 아니다” 하고 그러는 것은……

○**이학재 위원** 제가 이것 질문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한 부작용이 그냥 회비가 많다는 그런 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다만 한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례가 원산지증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비를 안 내면 원산지증명을 안 떼어 주고, 그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재 위원** 확인절차, 회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라면 이게 구체적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 때문에 계속적인 연장을 해 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들이 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회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혹시 있을 그런 부작용에 대한 제도 차원은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상공회의소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규 위원** 예,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상공회의소 회비를 정할 때는 세액의 0.4%인지 0.3%인지 하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건 법에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법에?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명규 위원** 법에 0.4%라고 어디에 있어요? 당연회원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있지 그 전체 법에 0.4%라는 게 있습니까? 몇 조에 있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법 제14조에 “회원 및 특별회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금액이라는 게 저희가 0.4%로 정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일단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다 이거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승인한 내용이 저희는 0.4% 범위 내에서, 0.4%……

○**소위원장 노영민** 0.04…… 0.4?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0.4%……

○**이명규 위원** 세액의 0.4.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1000분의 4입니다, 1000분의 4.

○**소위원장 노영민** 아, 글썽 세액의, 매출액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매출액의 0.4%……

○**이명규 위원** 세액의 0.4, 맞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매출세액의 0.4%입니다.

○**이명규 위원**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당연가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부칙은 없애버리자, 어차피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면 매년 이렇게 같은 내용을 2년마다 되풀이하고 이럴 게 아니고 아예 당연회원제도를 유지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러자면 부칙을 없애자는 그런 얘기는 지금 대충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회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 지경부도 반대를 하고 해서 이걸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을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이 당연회원의 가입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과연 이걸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제상황은 항상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명규 위원** 그리고 경제규모가 매년 커진다면 이걸 2년 있으면 또 개정, 또 개정,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조3항에 이 회원의 가입기준에 대해서는 0으로 정하는 게 어떨겠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중소기업들하고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입장을 충분히 조율해 가지고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 이렇게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간에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걸 협상을 중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당연회원의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0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종혁 위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한 불만사항이 두 가지로,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물론 중소기업계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이 법의 취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제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회원의 가입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당연회원의 범위가 자꾸 넓어질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성장에 따라.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되어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컨선이고 두 번째는 지금 회비를 감면해주는 상공회의소가 전국적으로 꽤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 회비의 35%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상공회의소의 자체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조금 선언적으로라도 회비감면에 관련된 근거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소기업단체에도 가입하고 상공회의소에도 또 가입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중소기업계에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명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은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그렇게 해 주실 경우에도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대개 이걸 조정하는 주기 같은 걸 법에서 좀 정해 놓으시면, 예를 들면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규정을 하나 넣어주시면 아마

법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종혁 위원 0으로 정하되 주기를 정한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김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1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2억 5000만 원 이상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실 때 최초 대통령령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최초에 특별시가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습니다. 이게 옛날 상황인데 지금은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 정말…… 밑에 보면 시·군은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사업자들 요새 2억 5000 다 돼요, 연 매출액, 구멍가게 정도 수준의 유통업자들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특별시는 한 20억, 광역시는 10억, 시·군은 5억 정도가 최초의 금액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부가세법상 매출액이, 한번 보세요. 시내의 조그마한 가게들 있지요? 다 됩니다. 탈세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합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매출이 신고를 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규모보다는 조금……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요새는 투명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카드 매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 정도가 될, 맞을 겁니다. 참조하시고 령 할 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당면회원제도는 유지하고 가입 기준은 령으로 하되 최초의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좋겠고요. 경감 규정이 바로 그 부분에, 령에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세자료 요구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개정 주기를 법에 명시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은희 위원 기간은 그러면 몇 년, 3년……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근거를 두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할과 통합에 대한 규정 신설이 있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대체토론의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그리고 정부측 의견이 있거든요. 별로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세부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0시5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먼저 이 개정안은 첫째, 신제품의 인증 등에 관해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이 인증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인증기준이 없거나 또는 현행 인증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증기준의 미비에 따라 상품화 및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인증기관의 분야별 통합 문제입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8개 비영리 시험인증기관 중 6개 기관을 통합해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설립하고 권리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을 통합하고 규모를 갖추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부칙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통합 관련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인증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전환 시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우선 굉장히 시급한 입법사항인데 이학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인증기준 미비로 상품화 및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대표적 사례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게 강제인증 품목이거든요. 한 1200개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게차에다가 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붙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지게차의 인증기준에는 가스를 쓰는 내연기관은 인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차가 출시를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기술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국제규격을 그냥 가져다가 일단 출시를 해 놓고 저희 규격을 나중에 만드는, 그래서 저스티파이(justify)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 저희들이 이런 융합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종혁 위원 OK,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시험인증기관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민간기관인 해당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통합기관에 대한 사업 비용의 정부 보조는 정부 지원이 없는 타 시험기관, 검사인증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민간영역의 비영리법인을 통합해서 특수법인화하는 점도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시험인증시장이 4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현재 시장규모가 4조 원인데 그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서 육성해 온 품목별 시험인증기관들의 전체 매출을 다 합치면 20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4조 원 중에 2조 원은 해외로 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시험인증기관들이 앞으로 존립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택한 불가피한 길입니다. 통합을 해서 대형화를 하지 않는 한은, 이 기관 자체가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통합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루어진 통합이고 각 기관의 노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의를 다 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해 있는 노조들까지도 지금 합병에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이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돼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발전이 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 시험인증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대규모화하는 기관은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을 주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스스로 서바이브(survive)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부 지원을 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과 같이 경쟁하도록 이런 방법론을 과도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을 법에다 넣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안 됩니다. 법이 없이 들이 그냥 통합을 하면 각종 세금을 30%쯤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산이 그냥 30% 날아가 버리니까 통합의 모티베이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법에다가 이 통합 과정을,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학재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여기 30조의5,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상법상의 회사로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으로는 통합 자체가 좀 힘들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이 부분에서? 현재로 이것도 법적 근거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것은 시험인증

기관이 법에 의해서 통합될 때는 일단 등록세를 제외하고는 각종 세금이 다 면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이 시험인증기관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조세지원을 해 주자는 건데 법·경제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조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으로 넣었는데요, 이것을 넣어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는 회사가 나왔을 때 저희가 세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세지원조치를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건 별도로 나중에 하지요.

○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개정안 30조의5는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5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최연희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에는 신탁대상을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또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 근거 외에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안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및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만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엔 기술거래소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술거래소의 업무 일부인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이라든가 투자 등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 미비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정부안에서는 기술의 기부채납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타당한 입법조치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최연희 의원안에서는 공공연구기관 첨단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체계와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최연희 의원안에서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기술지주회사는 녹색 또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좀 더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해서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최연희 의원안에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및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법체계상 또는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 등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기술지주회사 외에 출자회사도 녹색기술 및 첨단기술을 보유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은 너무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기술지주회사 검직을 위한 휴직, 기술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한다든가 법체계상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 법은 일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R&D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폐지된 기술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제출했구요. 최연희 의원님께서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자구 수정사항이라든지 일부 중복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저는 21조의3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50% 이상 보유하도록 명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50%로 해 놓으니까 너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 제약조건이 많아서 그것도 30%로 낮추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로 하면 회사의 운영상 자본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제약이 될 것 같고요. 2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권 문제는 경영권자가 알아서 하도록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개정안 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저희는 맞춰 놓은 거고요, 100분의 50으로 해서 맞춰 놓은 거고, 그것은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렇게 되고 지금 교과부에서 하향 조정하려고 그러는 부분은 현물출자, 기술의 현물출자를 50%로 의무화해 놔는데 그게 돈 말고 기술로만, 현물로 출자하는 게 너무 높다 그래서 회사가 잘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것을 낮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은 교과부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가는 거고요, 그

것은 다른 50%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것도 낮춰지지 않나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현물출자 부담이 많이 크니까 그것은 30%로 낮춘다는 겁니다.

○배은희 위원 현물출자뿐 아니라 경영권 그것도 낮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분은 저희랑 똑같이 50% 이상으로……

○배은희 위원 개정안에서도 50%로 돼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배은희 위원 그런데 50%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규제가 될 것 같거든요. 20% 이상으로 해도 50%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혁 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어때요?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50%를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를 들자면 기술지주회사도 전체적으로 보면 첨단기술이라든지 녹색기술들을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 경제 발전, 국익 증진에 일조하는, 근본취지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요즘에는 많이 변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 비하면 아무래도 사업 활성화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유연성이나 또 일정 부분에 민간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직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직까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을 굳이 50%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20% 이상에서 50%로 하는 것을 ‘안정적 경영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공공연구기관의 측면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체의, 앞으로 기술의 이전, 기타 이 기술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좀 더 유연한 측면으로, 경영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굳이 이것을 50%씩 올릴 필요가 있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게 말 그대로 지주회사거든요.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내놓은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공공 R&D를 통해서 나온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자체가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것이 다른 주주들에 의해서 사유화됐을 경우에는 기술 자체가 같이 사유화가 돼 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종혁 위원** 아니, 기술을 가지고 국가의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 제 말씀은 이것이 지주회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기능은, 물론 자기들이 직접 사업화도 하지만 대부분을 출자 형태로 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민간의 플레이어들한테 이 기술지주회사에서 출자를 해 줘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화는 민간들이 하고요. 다만 홀딩 컴퍼니로써 그 지분을 관리하고 보유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 자체가 사유화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R&D가 공공자금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노영민** 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0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 제출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

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양이 조금 많습니 다마는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용어의 정의규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용어와 ‘엔지니어링사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개정안이 좀 적절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어의 정의를 다른 규정과 관련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기본계획에다 정보체계 및 표준화와 같은 규정도 포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사업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 시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들로 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간단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실태조사 및 표준화와 관련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추진 주체가 정부와 지식경제부장관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구축 대상 정보체계의 범위라든가 시범사업 대상 사업, 기술지원센터 지원 범위, 전문인력 육성 관련 재정 지원 범위 등 체계 및 자구 수정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 지원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선진기술의 도입 확대를 위해서 해외 공동연구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의 허위신청 및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산 운용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기

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출자금을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신고증의 불법 사용 및 명의대여와 관련한 알선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례에 따라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페이지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 처분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부실성과품 산출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든지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직권말소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체계 및 자구 정비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전체 엔지니어링 업체의 약 80%가 기술인력 수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서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가 도입·시행 중이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들 의견도 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타 입법례를 참조해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제조합과 관련해서는 무상지원이 포함된 자금지원으로 인한 공제조합의 부실 초래 우려 및 조합 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구정리 차원에서 차입 대상 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앞부분은 대개 체계·자구·용어정의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는 뒷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든지 공제조합에서의 차입 대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배은희 위원 수정의견이 다 검토보고에 반영돼 있지요? 검토보고 반영해서 정부에서……

○소위원장 노영민 일단 정부 측은 전문위원 검토, 수정의견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체계·자구 수정이라든지 저희들 규정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를 저희들이 정부 협의 과정에서 없었는데 다시 설치를 하는데 또 관계 부처 반발이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로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최연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참조해서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게 원래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서 이번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법령이 바뀌지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아주 시의적절한 법률 개정이라고 보아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엔지니어링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특히 우리 국내시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해외시장에도 이게 급속도로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정비라든지 물산업 관련된 거나 이런 데는 앞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나는 대단히 환영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해외 경쟁국가보다도 기술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에 관련돼 있는 지원 규정은 이번에 신설했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산업에 관련된 겁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법률명은 산업진흥법으로 고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해외 프로젝트 이런 플랜트 사업을 가지고 경쟁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제도를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지원 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이 법 규정에, 예를 들자면 앞으로 그런 엔지니어링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업들이 말이지요,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한 수주활동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무슨 진흥조항이나 신설조항 그런 게 있습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기술 개발에만 머물러져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점 커지는 시장 그다음에…… 커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소위 오래됐던 도시 인프라가 잘못돼 있음으로 해서 개조·정비하는 이런 영역의 시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그와 같은 해외시장 진출 개척을 지원하는 그런 류의 어떤 관련 조항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현행법에도, 개정하기 전에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이래 가지고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었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기존에 있었던 건 그냥 법에 선언적으로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선언적 규정으로 기존 법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하나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이 법의 개정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영도 한번 쳐다보실 것 아닙니까, 시행령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그럴 때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따내는 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행령 등을 좀 정비해서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법 규정 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다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 상담·지도 그다음에 기술인력 교류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더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테마의 하나로 해외진출 지원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낙후되어 있는 기술 개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것은 주로 R&D 지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그런 것들도 영에 좀 적절하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담아 가지고 추진계획들을 영에 담아 두시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진출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영에 담아 달라 그 부탁드립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들었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예, 들었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2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제8항 박상돈 의원, 이종혁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종혁 의원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구분과 용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권역 구분 명칭을 현행법에서는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존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맞춰 가지고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혼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및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하는 업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전체위원회에서 최연희 위원께서는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수요자의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업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자구정리 차원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란 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혁신사업’의 명칭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변경하고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부안에서는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이 발생하여 특혜성 논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부안에서는 산업법에 따른 재정비계획과 중복 추진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산업법 동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재정비사업’을 ‘재생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만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토지 등의 협의 매수 규정을 정부안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취득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법 논리상 동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해석상 협의를 통한 매수 방식은 당연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또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공공시설에 한하여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아홉 번째,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정부안에서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지고 다만 민간자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 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서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등 수익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열한 번째, 박상돈 의원 안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성동 위원, 주승용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습시다마는 저희들의 의견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은 준공시점이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불확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한 행위를, 법률적 효과를 연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전반적으로 이번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차원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형 공장 명칭과 정의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최연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파트형공장의 입주 업종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식기반산업’ 이렇게 수정의견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저희 시행령에는 ‘기반’이 빠져 있습니다. ‘지식산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어 통일 차원에서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이렇게 ‘기반’을 빼면 시행령의 용어하고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구수정을 하나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

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또 민간이 구조고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되 다만 토지 소유자가 대행 개발하는 형식 이것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한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있어서도 수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민간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박상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 개선의 문제와 어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것의 준공시점을 연결 짓는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조의 정의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지원시설 이것은 기업지원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 지원시설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들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것을 기업지원시설로 한정해 버리면 아파트형공장의 개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통상적으로 새로 저희들이 만드는 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회의실도 그 안에 들어가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실도 들어가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명규 위원 물론 지원시설인데 기업지원시설로 한정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주되어 있는 기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원시설을 만들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기업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지원시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식당의 경우에는 그 기업하고 관계 있나 없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2조 다른 규정에 보면 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맞추어서 기업지원시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다른 규정은 공단 같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기업지원시설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파트형공장의 용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용어 통일 차원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규 위원** 예컨대 식당 같으면 기업에 일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먹으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시설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만 밥 먹으러 와야지 외부 사람이 밥 먹으러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안 맞지.

그래서 기업지원시설 하지 말고 지원시설 하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해서 하면 아파트형공장이 개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걸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금방 생각나는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기업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원시설을 잘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꾸 기업지원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지원시설 하지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지원시설이라 해도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데는 큰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우려, 예컨대 이법을 집행하는 산단공이나 이런 데서 너희는 기업하고 관계 없잖아 이러면 한 방에 가거든요. 지원시설 중에도 너는 기업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데 산단공이 그것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촉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용어 통일을 위해서 단순 지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용어 통일 차원에서는 기업지원시설로 하는 것이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그냥 ‘기업’ 자를 빼고……

○**이명규 위원** 아니, 2조의 정의에서 지금 나오는데……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2조의 6호에 보면, 6호 또는 9호에 보면 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것은 산업집적 전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기업지원시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형공장 한 동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 보면 다른 법에도 지원시설로 되어 있지 기업지원시설, 연구소지원시설 이런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원시설로 되어 있지.

그래서 용어 통일을 위해서 기업지원시설을 지원시설로 그냥 전부 다 해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없는 용어를, 일반 다른 법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관련된 지원 시설이나 여부의 판단권을 산단공이나 이런 데서 갖게 되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냥 지원시설로 하라……

차관님, 이의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의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저는 뒷부분 11번의 국가 균형발전정책 의무이행과 관련된 박상돈 의원님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의견대로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을 2030년 이후로 못 박자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과정의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의 내용을 보면 지금 2015년도까지는 1단계공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만 이전하게 되어 있고 2015년 이후부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0년까지.

그래서 그때 자족적 기업도시 해 가지고 기업의 유치가 이때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혁신도시는 정상대로 추진되면 목표연도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간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세종시 원안을 혁신도시하고의 경쟁 내지는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에는 행정기관만 이전하게 되어 있고 2단계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1단계 때에 혁신도시들을 다 기업을 입주시킨 다음에 세종시하고 상호 보완되게,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되게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을 2030년으로 이렇게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세종시 건설을 완료한 시점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동의를 하면서도 과정상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오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불확실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연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것은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처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것을 연계시켜서 균형발전 정책을 취할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이 병립된 것이었습니다,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고 소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학재 위원 저는 세종시하고 혁신도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만 되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확실한 행위다, 뭐 이렇게 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불확실한 행위라고 하면 오해가 되지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산집법 개정에 대해서 여기 박상돈 의원님이 낸 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수도권 지역의 공장의 신·증설, 이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균형발전정책과의 형평성이 맞아져야 된다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부에서도 박상돈 의원님의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원래 정책이니까,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 정책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정책이 진행되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취하는 법률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식경제부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33조의2 신설 부분, 산업단지 내의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신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설 구역에 지원시설 구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이 발생할 것인데 특혜성 논란이 우려되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가상승분을 환수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지가상승분을 환수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규 위원** 됐다, 수정안대로 가면 되겠네. 없습니다.

기업지원시설이라는 용어 고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1.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종 의원 등 61인 발의)

(11시47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내지 제25항 이시종 의원, 강창일 의원, 김희철 의원, 최구식 의원, 이정희 의원, 주성영 의원, 이용섭 의원, 노영민 의원, 안상수 의원, 이종걸 의원, 주승용 의원, 김재균 의원, 조승수 의원, 배은희 의원, 조배숙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 및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7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김희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1항 이시종 의원 등 61인이 제출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부되어 온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조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요건을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준대규모 점포의 개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설 영향평가 실시의무화, 지역사회 공헌약정 체결의 의무화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경계로부터 7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유사한 법률안에 비해서 규제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또 규제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조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조배숙 의원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전체를 총괄해서 질문하실 때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전체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9항부터 31항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도 청취했고 정부의 각 부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은 대개 정리되었습니다.

정부 측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쟁점이 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와 보존구역에 대한 규정의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상점가가 현재 전국에 10개 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가 아니고 시장활성화구역이 18개 지정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리고 상점가라고 하는 것

도 현재 법률적 개념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상점가를 포함하면 지금 당장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급속하게 확대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가 포함될 경우에는 상점가라는 용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전국 상권의 약 80%가 커버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의 SSM이든 체계적인 형태의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진출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점가에다가 전통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대외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점가가 왜 보호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왔을 때 ‘이게 저희들 전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점가라는 곳을 한번 직접 가보시면 굉장히 현대화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점가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제 외교통상부라든가 공정거래위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셨다시피 지금 지식경제부가 지경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저희의 안은 정부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식경제부가 위험을 안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아마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점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상으로 저희들이 더 나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 보았듯이 그 상점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력한 요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상점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존이든 보호든 가치가 인정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점가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게 한정하시면 불과 몇 개 되지를 않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 정도로 하면 어떤가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상점가에 대한 법적인 용어를 정의해 놓은 규정이 어느 법 몇 조에 있습니까? 조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유통산업발전법에 “일정 범위 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에서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06년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4328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점가, 다시 말하면 상인회……

○**소위원장 노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 한정한다면 상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아니, 지금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점가 사천몇백 개를……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점가 4328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점가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호·육성이든 보존이든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던 하고 있던 상점가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아니요,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는 말씀 올린 적이 없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요,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까 ‘몇 개 안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것은 지금 상권활성화구역 18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내가 상점가를 물었지. 상권활성화구역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물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개념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4300개의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특별한 상점가에 대해서 보호·육성이든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호·육성과 보존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점가가 있다면 이 상점가에 한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 설명을 좀 들어 주시면 상점가 중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이 상점가에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점가를 일단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지요.

○**이명규 위원** 쉽게 말하면 국가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하는 상점이 현재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정부가 권한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래요. 노영민 위원장님 말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상점가는 여기에 좀 넣자는 의견이신데 차관님 말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상점가는 아예 없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 아니, 그런데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명규 위원** 만약 상점가를 지원하고 싶으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넣어야 되지 상권활성화구역

에 들어가지 않는 상점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없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6개인 시장활성화구역에 상점가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는데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지원계획이 확정된 상권활성화구역’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 상점가들이 일부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재균 위원** 아주 극소수 일부만 포함되겠지. 전국적으로 16개 구역밖에 안 되니까.

○**이명규 위원** 어차피 상권활성화구역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리고 500m를 초과해서 일정한 범위가 안 된다고 해서 1000m로 했는데 그것 안 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500m도 사실 지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결정한 부분이고요. 정부 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면 어차피 이것은 조우닝(zoning) 개념인데 500m나 1km나…… 500m는 되고 1km는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되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1km로 갔을 경우하고 500m로 갔을 경우하고 행위가 제약되는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종혁 위원** 차관님, 어저께 간담회에서 잠깐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WTO 제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설사 WTO 제소가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패널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을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으로…… 지금 대통령도 친서민 정책 표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폭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들어 주고 그리고 난 연후에 나중에 가서 제소가,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은 WTO 전문가들은 이것이 제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WTO 제소감도 아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게 제소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른 유의 소위 말하는 수출에, 다른 국익

에 침해되지 않게끔…… 이것은 이런 유의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익의 피해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다시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렇게 한번 가 보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나도 그것은 알아요. 법에 한 번 정해 놓았다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것은 정부가 취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사회적이거나 국제적으로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이종혁 위원** 아니, 그것은 국가적·사회적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제소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WTO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어떤 필요가 있어도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결론이 나 버리고 나면 저희들은 영원히 빼도 막도 못하게 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WTO에 가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저는 오히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패소되면 그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양허안 개정에 대해서 절차 들어가면 됩니다, 요청하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희생을 무지하게 해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하여간 그렇고요.

또 하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시설, 소음, 교통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법규에 의해서 모든 규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100평짜리 가게를 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소음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에 속해 있는 SSM은 100평짜리 가게만 내도 소음 규제를 받고 그냥 혼자서 100평짜리 가게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규제도 안 받고 그런 형평의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치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소위원장 노영민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링위에 올라가서 싸우면 그게 공평한 것은 아니지요. 대규모 기업 계열의 SSM과 일반 개인의 점포가 같은 평이라고 하더라도 소유 관계라든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 소음 규제는 일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규제 아닙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상권활성화구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현재 법체제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존 내지는 보호·육성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상점가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에 이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상점가가 아니라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용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말씀을 자꾸 이렇게……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 이게 들어가도 정부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아니지요. 위원님, 상점가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정부 입장에서 지원에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것 모르지 않아요. 아까 몇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런 제도가 현재 없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점가

에 대해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보호·육성이나 보존의 가치가 인정되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형식 논리라면……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지만 그것이 법에 규정되면 저희가 체도를 만들어야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단정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꼭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다 지원합니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체도를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원 체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재량권이 많습니다. 그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상점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호·육성이나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아니지요. 위원님, 지자체가 특정한 상점가에 대해서 재량행위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지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여기도 보존구역이다라고 지정해 버리면, 그런 재량행위를 지자체에 허용해 주는 것은 안 되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를 들면 요즘 수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상점가에다가 공중화장실 지어 줍니다. 공중화장실 지어 주고 여기 재정 지원했으니 보호·육성 가치가 있어서 이것은 보존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버리면 한도 끝

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까 지원이 없다고 그러더니 지원이 있네. 알고 계시면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제 장관 답변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에서 계속해서 이리 빼고 유예를 시키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종혁 위원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김재균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2009년 12월 21일에 지경위 대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이 허가제 도입을 양보해서 지경위 대안인 강화된 등록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정부에다가 이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상인 대표들하고 6,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의 강화된 등록제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일부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강화된 등록제의 내용이 지금 지경위의 대체 법안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부 문제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균 위원 언제까지 해소가 안 된다고 늘어 뵈 걱정이에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하여간 위원님 덕에 지금 소위……

○김재균 위원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이와 같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이나 상인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오히려 WTO 제소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늘어 빼고 있으면 SSM 출점 건수가 139건이 늘어나 가지고 세 달 사이에 35%나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종혁 위원 차관님, 김재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내 입장은 결국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요.

어차피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어저께 외교통상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유의 국익을 도외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망가지면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양산시키는 더 엄청난 근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외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명규 위원님하고 노영민 위원장님하고 두 분의 의견도 그런 유의 취지를 갖고 계시고 해서 상의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절충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상점가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상인들의 요구는 결국 지금 현재 상점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또 그렇게 정했을 때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오히려 나중에 가 가지고 시행상의 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거리의 문제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WTO도 조우닝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500m 이내는 되고 1km 이내는 안 되고 나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탄을 받는다면 500m도 안 되는 거고 1km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500m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되고 1km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유의 그것을 규율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상점 안은 우리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 관해서는 1km로 절충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것은 좀 받아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는 거리의 개념보다도,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슈퍼마켓 연합회 분들이 주로 상점가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종혁 위원 아,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고 자료에 보더라도 500m하고 1km에 보면, 우선 현실적으로도 보면 SSM 진출이 500m로 규율하게 되면 한 30% 전후밖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1km로 하게 되면 50% 이상 정도가 SSM 이행조정

명령 권역이 되더라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여차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다 가질 수도 또 다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국익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장들도 일부 고려하면서 또 우리가 쳐다봐야 할 WTO의 여러 가지 제재입장, 그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zoning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500m, 1000m, 나는 그게 짧고 길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 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김재균 위원 1km 이내?

○이종혁 위원 예.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마켓연합회라든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설득이 안 된 부분이 500m, 1km가 아니고요, 슈퍼마켓연합회를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기점이 없지 않습니까? 보존지역을 선정할 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점가를 해 줘야만 자기네들이 보호의…… 일단 출발점이 없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재래시장 기준으로 500m 하는 게 1km가 되는 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득할 수가 없고요.

○이종혁 위원 그러면 지경부가 기왕 이번에 하는 것 상점가도 좀 받아들이고 1km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가보지 뭐.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아니, 그것은 전향적이 아니라……

○이종혁 위원 아니, 대통령이, 친서민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려면 이런 정도의 정책적 의지는 보여 주셔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이종혁 위원 아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가치의 판단이고 철학적 판단이에요.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리고 위원님, 어

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통시장을 기점으로 1km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종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경부에서는 법사위원회에나 지경부 안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WTO 정신 살려 가지고 이리저리 대패질 잘하니까 지경위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상점가도 넣고 그리고 1km 이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법사위로 보냅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동의합니다.

○김재균 위원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견해는 좋은데 여태까지 우리 지경위에서 정부가 아주 저렇게 반대하는 것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고, 지금 상점가라는 개념을 금방 우리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0m, 1km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도시를 가면 기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냥 상점가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기점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상점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현재 있는 사천팔백몇 개의 상점가가 아닌 또 다른 개념의, 약간 어떤 제한된 개념의 상점가의 정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아시다시피 정부가 거세게 반대하면, 우리 지경위부터 반대하면 이것은 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뻔하게 알면서 올리면 피해는 누가 봅니다, 결국? 피해는 결국 우리 중소 상인들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경위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 법사위 가 해결하라고 던지기는 쉽지만 당연히 법사위 가면 이 법 부결되면 그러면 누가 피해보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는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상점가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상점가의 정의 개념을 새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규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모래 월요일쯤……

○**이종혁 위원** 월요일쯤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엽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사실 오늘 우리가 법안소위를 밤늦게까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오후 2시에 갑자기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법안소위 날짜를 지정할 때는 예상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2시에 본회의가 예상되어 있는데 또 본회가 처음에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한다더니 처리할 의안이 59개가 갑자기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어떻게든 우리 지식경제위 차원에서는 마무리를 지려고 위원님들이 각오를 다지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22일은 이것 1건만 가지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위원장님, 제가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취합을 해 가지고 약간 절충한 안을 하나 지금 마련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은 나중에, 왜냐하면 오늘 어차피 못 하니까, 시간이. 그것은 위원님들 회의 끝나고 좀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제31항은 소위원회에서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에 다루겠습니다.

자, 1차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법이 하나 마지막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뭐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위원장 노영민** 아, 이게 우리 1차관 소관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마지막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 그래요.

3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시16분)

○**소위원장 노영민** 자, 의사일정 제32항 정부가 제출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금융 부문에 대한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형해화 및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권으로 동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임용권 위임조항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임용권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관의 임용권 위임 범위를 ‘일부’에 한정해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입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부 측,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규 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종혁 위원** 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고맙습니다.

○**이명규 위원** 월요일 몇 시에 해?

○**김재균 위원** 내일이라도 합시다. 뭘 월요일까지 가?

○**이종혁 위원** 내일은 전체 위원회가 있어.

○**김재균 위원** 전체 회의 끝나고……

○**소위원장 노영민**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김재균 위원 아니, 내일 하시자니까.

○이명규 위원 10시에? 2시에 하자, 2시에, 월요일.

○소위원장 노영민 월요일 2시?

○이명규 위원 어, 2시에 해.

○김재균 위원 내일 하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내일 상임위가 있어서.

○김재균 위원 아, 상임위 끝나고.

○소위원장 노영민 22일 2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재 균 노 영 민 배 은 희 이 명 규
이 종 혁 이 학 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대 수
전 문 위 원 문 병 철

○정부측 참석자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 채 민